

信用狀條件과 一致하는 書類의 要件

李千守*

-
- I. 序論
 - II. 完全性 要件
 - III. 正規性 要件
 - IV. 連繫性 要件
 - V. 結論
-

I. 序論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즉 일치 또는 불일치가 문제시되는 경우는 다음 네가지 경우이다. 발행의뢰인이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발행은행에 대해서 대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발행의뢰인에 대해서 대금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수익자에 대해서 신용장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익자가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발행은행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앞 두가지는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불일치가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문제시되는 경우인 반면, 다른 두가지는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에서 문제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신용장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신용장조건과의 서류일치성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즉 신용장조건 자체가 불명확·부정확한 경우, 신용장상에 사용된 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의 특별한 의미와 당사자간의 해석에 있어 의혹이 있는 경우, 제시된 서류상의 표현이 신용장상의 그

*釜山大學校 經營大學院 講師.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시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제시되어야 할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신용장상에 무서류조건이 있는 경우, 제시된 서류 이외의 비사기적 상황(non-fraud circumstance)을 인용함으로써 은행이 지급거절한 경우, 신용장 유효기간내 불일치 치유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시된 서류에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불일치가 있고, 발행 은행이 발행의뢰인과의 교섭결과, 발행의뢰인의 지급불능, 기타사유의 발생을 빌미로 서류수리를 거절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¹⁾

지금까지 이러한 일치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기준으로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²⁾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³⁾ 그리고 조건부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qualified strict compliance)⁴⁾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서류일치성에 관하여 은행의 서류심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엄밀일치’(strict compliance), ‘상당치’(substantial compliance) 그리고 ‘조건부 엄밀일치’(qualified strict compliance)가 각각 구체적인 어느 범위까지 서류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
- 1) James J. White &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pp.834~835 참조.
 - 2)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Airlines Reporting Corp. v. Norwest Bank*, (1995) N.A., 529 N.W. 2d 449(Minn. Ct. App.); *Mueller Co. v. South Shore Bank*, (1993) 991 F.2d 14 (1st Cir.); *Banco Do Brasil, S.A. v. City National Bank*, (1992) 609 So. 2d 689 (Fla. Dist. Ct. App.); *Alpargatas, S.A. v. Century Business Credit Corp.*, (1992) 583 N.Y.S. 2d 441; *Lease America Corp. v. Norwest Bank Duluth*, (1991) N.A., 940 F.2d 345(8th Cir.); *N & C Properties v. AmSouth Bank*, (1990) NA, 558 So. 2d 906(Ala.); *Occidental Fire & Casualty Co. of N. Am v. Continental Bank*, (1990) N.A., 918 F.2d 1312(7th Cir.).
 - 3) *Mount Prospect State Bank v. Marine Midland Bank*, 459 N.E.2d 979 (1983) (Ill. App. Ct.); *Tosco Corp. v. FDIC*, (1983) 723 F.2d 1242 (6th Cir.); *First Arlington Nat'l Bank v. Stathis*, (1981) 413 N.E.2d 1288 (Ill. App. Ct.); *First Arlington Nat'l Bank Stathis*, (1980) 90 Ill. App. 3d 802, 413 N.E. 2d 1288; *First Nat'l Bank of Atlanta v. Wynne*, (1979) 256 S.E.2D 383 (Ga. Ct. App.).
 - 4)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of-Credit Law: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3, 1991, pp.295~297. *Brown v. United States Nat'l Bank of Omaha*, (1985) 371 N.W. 2d 692 (Neb.); *Mercantile Safe Dep. & Trust Co. v. Baltimore County*, (1987) 526 A. 2d 591 (Md.); *Beyene v. Irving Trust*, (1985) 762 F. 2d at 7 (2d Cir.) 핫키스(Hotchkiss)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신용장조건으로부터의 사소(minor)하거나 중요하지 않은(immaterial) 이탈을 허용하는 서류심사 접근방식으로서 조건부 엄밀일치(qualified strict compli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탈이 'insignificant', 'obvious and immaterial', 'inconsequential'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엄밀일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접근방식, 즉 엄밀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그리고 조건부 엄밀일치의 원칙 등의 다각적인 시도는 중대한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⁵⁾ 첫째, 일치성 판단에 있어 다각적인 시도는 신용장의 거래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은행이 서류상에 존재하는 하자의 의미와 그 중요성까지도 평가하여야 한다면 수익자는 이로 인해 신속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상당일치나 조건부 엄밀일치는 은행이 소송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대금지급에 대한 요구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은행비용의 증가와 소송위험의 비용은, 최종적으로 신용장을 통해 거래를 행하는 업계에 전가될 것이다. 셋째, 신용장의 일관성 없는 취급에 대한 중대한 결과는 신용장에 있어 거래당사자와 그들 은행의 입장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류일치성 기준과 관련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고, ...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그리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제 5편 제 109조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 신용장조건과 내용에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들 양 규정에서 보듯이, 신용장조건을 일치시키는 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고 또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어야 함을, 그리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신용장조건과 내용에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제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용장통일규칙과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제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항상 원활히 해결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갖추어야 될 구체적 요건으로서

5) *Ibid.*, pp.299~300.

6) UCP, 1993, Article 13-a.

7) UCC, 1995, §5-108 (a).

는 완전성, 정규성 그리고 연계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서류를 제시하는 신용장수익자의 입장에서 또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서류일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完全性 要件

수출상인 신용장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서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⁸⁾ 예를 들면, *Donald H. Scott & Co., Ltd. v. Barclays Bank Ltd.*, 사건⁹⁾에서, 신용장은 3통의 원본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수익자가 2통의 원본선화증권을 제시하거나, *Schweibish v. Pontchartrain State Bank*, 사건¹⁰⁾에서 신용장은 환어음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은행에 의해 수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서류 뿐만 아니라 각종증명서를 비롯한 임의서류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Anglo-South American Trust Co. v. Uhe* 사건¹¹⁾에서, 신용장은 검사증명서를 포함하는 제서류를 요구하고 있었다. 발행은행은 검사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는 않는 서류를 수리하였지만 발행의뢰인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판례가 있다.

첫째, *Bank of New York & Trust Co. v. Atterbury Bros. Inc.* 사건¹²⁾에서, 신용장은 요구되고 있는 모든 서류가 발행은행에 제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증명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은 서류수령을 거절하였지만, 법원은 다른 모든 서류가 실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증명서는 불필요하고, 따

8)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 comparative study, 1970, pp.293~294.

9) (1923) 2 K.B.I., (1922) 12 LL.L. Rep. 502.

10) (1980) 389 So.2d 731, 30 UCC 645, 651-53 (La.App.).

11) (1933) 261 N. Y. 150, 184 N. E. 741.

12) (1929) 226 App. Div. 117, 234 N. Y. S. 442.

라서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¹³⁾ 발행은행으로서의 서류의 중요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은행이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서류가 발행의뢰인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발행의뢰인이 특정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서류가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발행의뢰인이 제 3자에게 물품을 전매하고 그 자가 모든 서류와 상환이 아니라, 특정증명서와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증명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 발행자에 대해서 발행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Richard v. Royal Bank of Canada* 사건¹⁴⁾은 위와는 달리 두가지 서류가 한가지 서류로 겸용되어 있었다.¹⁵⁾ 이 사건에서의 신용장은 상업송장, 중량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 중량증명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업송장에 중량이 기재되어 있었고, 또 중량증명서를 증명하도록 지정된 자가 그 중량을 승인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 중량증명서를 별개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겸용서류가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상업송장 겸 중량증명서(1 통의 서류)가 상업송장·중량증명서(2 통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발행의뢰인에게 있어 도움이 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의뢰인이 제 3자에게 물품을 전매해서 중량증명서를 포함하는 제서류의 제시에 합의하였을 경우, 발행의뢰인은 겸용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망설임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매매차익금을 알리는 것은, 발

13) E.P., Ellinger, *op. cit.*, p.296

14) (1928) 23 F. 2d 430 (2nd Cir.).

15)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로서, 신용장은 별개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및 중량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수익자는 상기의 서류들을 실제적으로 합치하고 있는 한 통의 서류('중량·포장 및 품질증명서'라고 표제가 된 것)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겸용서류가 상기의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그 1 통의 서류가 실질적으로 각각의 증명서를 겸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판단되는 한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신용장조건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東京高裁 1984年 4月 26日 判決, 高裁民集 37卷 1號 39面).

행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발행의뢰인에 대해서 조건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용서류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¹⁶⁾

독일에서도 신용장에서 요구되어 있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판례로서 연방통상법원 1959년 2월 19일 판결이 있다.¹⁷⁾ 이 사건에서는 신용장이 철도수령증명서 2통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수익자는 동 증명서를 1통밖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도수령증명서 1통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시서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신용장조건이 목적달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사소한 조건불일치는 수익자에 대해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 자체가 언급하고 있듯이, 철도수령증명서가 2통 있었다면 수입절차도 훨씬 간단하였을 것임을 생각하면 이 판결에도 의문이 존재한다. 만일 일정한 서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의 유효기간내라면 그 서류를 제시¹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결여서류를 보충하기 위해 은행보증장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발행은행이 이와 같은 은행보증장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미국의 판례로서, *Dixon, Irmaos & Co. Ltd. v. Chase National Bank* 사건¹⁹⁾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장이 선화증권 2통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선화증권 1통과 은행보증장이 제시되었다. 뉴욕주의 관습에 의하면 발행은행은 선화증권의 통수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제시된 은행보증장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16) E.P., Ellinger, *op. cit.*, pp.295~296.

17) BGH WM 1960, s. 38 ff.

18) Howard N. Bennet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ts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1995, p.53. 그러나 신용장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일치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 지라도 엄밀일치의 원칙 하에서는 수익자가 해당불일치를 치유하는 것은 배제된다. *Colorado Nat'l Bank v. Board of County Comm'rs*, (1981) 634 P. 2d 32, 41-42 (Colo.); *Siderius, Inc. v. Wallace Co.*, (1979) 583 S.W. 2d 852, 862 (Tex. Civ. App.); *United Technologies Corp. v. Citibank, N.A.*, (1979) 469 F. Supp. 473, 480 (S.D.N.Y.);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l Bank*, (1978) 569 F. 2d 699, 703-04 (1st Cir.); *Chase Manhattan Bank v. Equibank*, (1977) 550 F. 2d 882, 887 (3d Cir.).

19) 144 F. 2d 759 (2nd Cir. 1944).

판시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²⁰⁾ 銀行保證狀은 사정에 따라서는 부족한 서류의 보충수단으로서 인수될 수 있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보증장을 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뿐만 아니라 보증장은 원칙적으로는 제시된 서류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라고는 해석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불일치한 서류수리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위험을 항상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종종 보여지는 순수하지 못한 보증장은 신용장통일규칙²¹⁾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증장과 구별되어야 한다.²²⁾

Ⅲ. 正規性 要件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 정규성의 요건은 상업송장과 같이 수익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특히 적합하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업송장상의 물품에 대한 기술은 신용장상의 그것과 엄밀히 일치하여야 하고, 만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결하여 기재하거나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용인될 수 없다.

예를 들면,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사건²⁴⁾에서, 신용장상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Western, excluding India/Egypt'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는 'Any Western Brand-Indonesia (Inalum Brand)'라는 기재가 있는 상업송장을 제시하였다. 통지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하였지만, 발행은행은 선적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였다. 이에 원고인 통지은행은 영국법원에 피고인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하기 때

20) Backus & Harfield, "Custom and Letters of Credit: The Dixon, Irmaos Case, 52. *Col. L. Rev.* 1952, p.38.

21) UCP, 1993, Article 14-f.

22) 橋本喜一譯, 荷爲替信用狀의 法理概論, 九州大學出版會, 1994, 192~193 面.

23) UCP, 1993, Article 37-c.

24) (1996) 1 Lloyd's Rep. 135 (Com Ct. and C.A.).

문에 신용장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신용장상의 'Origin: Western, excluding India/Egypt'라는 기재는 원산지를 지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1993년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이 있는 이 신용장의 경우, 상업송장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에 있어 신용장이 'Origin: Western, excluding India/Egypt'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에 'Any Western Brand-Indonesia (Inalum Brand)'라는 기재가 있을 때에는 발행은행은 선적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는 취지를 판결한 것이다.

또한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사건²⁵⁾에서 신용장에는 'MOTOROLA 8900X-2(ETACS) PORTABLE RADIO TELEPHONE'이라는 물품명세가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에 의해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S3410A MOTOROLA 8900X-2(ETACS) PORTABLE RADIO TELEPHONE'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송장상의 'S3410A'의 추가는 불일치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은 서류수리를 거절하였다. 이에 수익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와 신용장상의 그것에 초점을 두고 주의 깊은 수익자는 신용장에 일치되게 단어 그대로 물품명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류점검상의 주의의무는 발행은행에게 분명한 불일치를 양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불일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물품명세는 '20 cm pipe-cutting machinery'이지만 수익자가 실제 제시한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가 'two 20 cm pipe-cutting machines'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슈미토프(Schmitthoff) 교수는 경미한 비정규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러한 상업송장을 수리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물품명세는 'two machines'이지만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단지 'machinery'만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단지 현대의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5) (1995) 94 Civ. 1210 (S.D.N.Y.).

이와 관련하여 슈미토프(Schmitthoff)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⁶⁾ 즉 “만일 제시된 서류가 모호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시는 악의의 제시이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를 심사할 때 은행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에 대한 지나치게 엄밀한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적절히 읽어서 이해한다면 지시표현과 제시된 서류상의 표현이 같은 의미이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치한다면 은행은 그 서류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견해에서 은행은 “로보트처럼 행동할 수 없지만 각각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들의 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언급²⁷⁾하고 있지만, 서류를 해석하는데 있어 은행에게 허용된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만일 엄밀한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인 경우에는 상업송장과 같은 엄격한 정규성을 요하지 않는다.

선화증권의 경우,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사건²⁸⁾에서는 신용장이 ‘Alicante Bouche grapes’의 거래를 위해서 발행된 상업송장에는 ‘Alicante Bouche grapes’가 있었지만, 선화증권에는 단순히 ‘grapes’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가 명확히 정규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인될 수 없다. 예를 들면, *AMF Head Sports Wear, Inc. v. Ray Scott’s All-American Sports Clup, Inc.* 사건²⁹⁾에서, 신용장은 아리조나의 ‘Scottsdale’에 물품인도를 명시하고 있는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시된 선적서류는 인디아나의 Columbus에 물품인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은행의 지급거절을 정당화하였다.

비록 그 실질적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성을 결하고 있을 때에도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특정상거래에서 특별한 관습이나 상인들간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수한 전문용어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기술과 다르게 명시된 선화증권은 용

26)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 1986, pp.346~347; Clive M. Schmitthoff, “Discrepancy of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7 March, p.97.

27) ICC, *Opinion(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cation No. 399, p.35.

28) (1924) 239 N.Y. 234, 146 N.E. 347

29) (1978) 448 F. Supp. 222 (D.Ariz.).

인될 수 없다.

예를 들면, *J.H. Rayner & Co., Ltd. v. Hambros Bank* 사건³⁰⁾에서 신용장은 1,400 ton의 'Coromandel groundnuts'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익자는 선화증권에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 'Country of Origin, British India'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신용장상의 문언과 선화증권의 그것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심에서는 수익자의 주장, 즉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이라는 표현은 'Coromandel groundnuts'에 대해서 런던 농산물시장에서 관용화된 기술이고, 또한 선화증권상의 난외기호 'C.R.S.'는 'Coros' 또는 'Coromandels'에 대한 약어이어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수익자(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Hambros Bank가 항소한 결과 이 판결은 번복되었다. 항소심에서 고다드(Goddard)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은행이 여러가지 고객의 업계사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기대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비록 은행이 업계의 관습을 알고 있고, Coromandel groundnuts이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로 기술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본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 은행은 만일 신용장발행의뢰를 인수하였다고 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Coromandel groundnuts'을 위한 선화증권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 은행이 Coromandel groundnuts 이외의 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의 지급을 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이 Coromandel groundnuts과 동일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다'고 하는 표현방식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 ... 본 사건에 있어 Hambros Bank가 이와 같은 거래관행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요점 외이다. ... 문제는 은행이 그 신용장에 근거해서 수익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수익자는 그 약속을 이용하였는지이다. 사건으로는 수익자는 이 약속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Hambros

30) (1943) 1 K.B. 37; 74 Ll. L. Rep. 10 (1942); Arora, Anu,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Lloyd's of London Ltd., 1984, p.83.

Bank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였다고 생각된다.”³¹⁾

환어음의 경우, *Tosco Corp. 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사건³²⁾에서 신용장상에는 ‘drafts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Letter of Credit Number 105.’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시된 어음상에는 ‘drafts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Tennessee letter of Credit No. 105.’라는 기재가 있었다. 聯邦法院은 이 어음은 ‘L’과 ‘I’ 및 ‘Number’ 대신에 ‘No.’를 사용하고, ‘Tennessee’를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이 명확히 정규성을 상실한 경우, 즉 환어음발행인의 서명이 누락³³⁾되거나 지급지시문언이 누락되거나 또는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람출급환어음이 제시된 경우³⁴⁾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서류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정규성을 갖출 필요는 있지만 이는 일치성 충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비록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한 서류가 정규성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장통일규칙과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될 수도 있다.

먼저 신용장통일규칙은 서류가 정규성을 갖추지 못한 서류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몇가지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는 수익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이 100톤의 물품(bulk cargo)을 선적할 것을 요구하면서 별도로 물품수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과 선화증권상에는 단지 97톤의 물품이 선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

31) 매킨넨(Mackinnon) 판사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해 주는 수많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알려진 관습과 관습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 만약 은행이 특정거래의 영업방법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영업영위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며, 또 은행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전혀 보호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32) (1983) 723 F. 2d 1242 (6th Cir.).

33) *Armac Industries, Ltd. v. Citytrust*, (1987) 203 Conn. 394, 525 A.2d 77, 3 UCC 2d 1512, 1515, 1519-20; *North Valley Bank v. National Bank*, (1986) 437 F.Supp. 70, 23 UCC 93 (N.D.Ill.); *Waidmann v. Mercantile Trust Co.* (1986) N.A., 711 S.W.2d 907, 2 UCC 2d 252 (Mo.App.).

34) *Colorado National Bank v. Board of County Comrs.*, (1981) 634 P.2d 32, 31 UCC 1681 (Colo.); *Lamborn v. Lake Shore Banking & Trust Co.*, (1921) 196 A.D. 504, 188 N.Y.S. 162, aff'd other single ground, (1921) 231 N.Y. 616, 132 N.E. 911; *Atari, Inc. v. Harris Trust and Savings Bank*, (1984) 599 F.Supp. 592, 40 UCC 1345 (N.D.Ill.).

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수량부족분은 신용장통일규칙³⁵⁾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정규성을 갖추지 못한 서류일지라도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로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량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액될 필요는 있다.³⁶⁾

다른 예로서, 신용장이 환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자가 제시한 선화증권 이면에 환적을 허용하는 환적조항(transshipment clause)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조항을 무시함으로써 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또한 신용장통일규칙³⁷⁾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익자가 제시한 선화증권 문면에 환적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명시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는 거절되어야 한다. 사실 은행으로서 서류를 심사할 때 선화증권의 이면에 있는 작은 인쇄 문구까지도 점검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의무 또한 없다. 만일 은행이 이러한 것까지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된 시간내에 서류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은행에 의한 신용거래까지도 붕괴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³⁸⁾

다음으로 서류가 명백히 정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수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Golodetz & Co. Inc. v. Czarnikou-Riona Co. Inc. The Galatia* 사건³⁹⁾은, India에 있는 kandia에서 Iran까지의 설탕매매에 관한 것으로 C&F an Iranian port 조건이었다. 설탕의 일부분이 선박에 적재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이미 적재된 상당량의 설탕이 화재 그 자체와 그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사용된 물에 의해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손실을 입은 설탕은 수입지에서 양륙되었고, 선화증권상에 이와 같은 사실이 부기되었다. 이에 확인은행(Chase Manhattan Bank N.A.)은 이와 같은 부기가 있는 선화증권은 사고부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확인은행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도널슨(Donaldson)판사는 선화증권상의 부기는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적재된 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고 선화증권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이

35) UCP, 1993, Article 39-b.

36) Clive M. Schmitthoff, *op. cit.*, p.96.

37) UCP, 1993, Article 23-d.

38) Clive M. Schmitthoff, *op. cit.*, p.96.

39) (1980) 1 W.L.R. 495.

사건에서 법원은 부기나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선화증권이 자동적으로 사고부 선화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상업적 견해보다 법률적 견해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Westpac Banking Corporation v. South Carolina National Bank* 사건⁴⁰⁾에서,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선적선화증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는 매입 은행에 '본선선적'(Shipped on Board) 및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이라는 부기가 있는 수취선화증권을 제시하였다. 매입은행은 이를 수리하여 매입에 응하였으나 발행은행은 이 선화증권이 선적선화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였다.

이 사건은 일심 판결(매입은행의 승소)과 항소심 판결(발행은행의 승소)을 거쳐, 결국 추밀원의 판결에서 그 해결점을 찾게 되는데 그 요점은 간단하다. 즉 제시된 선화증권이 형식상 '선적을 위한 수취' 선화증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과 발행시에 존재하였던 '본선선적'이라는 문구는 선화증권의 문면상 물품이 예정된 적재항인 멜버른에서 예정된 선박인 Columbus America에 그 일자에 본선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에 제시된 일조의 선화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본선선적 선화증권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Golodetz* 사건과 *Westpac* 사건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명백히 정규성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점검할 때⁴¹⁾에는 상업적 관점에서의 점검이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점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연하자면 은행은 단지 형식적인 면에서 서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고, 실제문제로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⁴²⁾

은행은 제시되는 서류의 정규성을 점검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상의 진정성까지 점검할 필요는 없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정규성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⁴³⁾ 사실 이러한 정규성의 문제는 위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⁴⁴⁾

40) (1986) Lloy'd Rep. 311.

41) 비록 이 두 사건에는 단지 선화증권상의 명백한 하자만을 다루고 있지만, 법정이 도달한 결론은 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서류에 적용하고 있다.

42) Clive M. Schmitthoff, *op. cit.*, p.99.

43) *Gian Singh & Co. v. Banque de l'Indochine*, (1974) 2 All E.R. 754 (P.C.) 사건에서 영국추밀원의 결정에서 다루어진 것은 위조된 품질증명서이었다. 즉 이 사건

외견에 따른 서류의 정규성에 대한 요구는 형식적 성격의 소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고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치하지 않을 의무를 은행에 부과한다. 이것과 반대로 은행기술상의 취급으로서의 서류에 관한 보통법의 범위에서의 약정된 조사가 곤란한 불일치는 은행의 심사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서류가 모든 신용장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어떠한 곤란함이나 의문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확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⁴⁵⁾ 서류는 특히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없이도 '은행의 시야'로부터 그 신용장과의 일치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⁴⁶⁾

이와 같은 원칙을 부위셀 상사법원이 1978년 2월 27일의 판결⁴⁷⁾에서 고려하고 있다. 벨기에 상사의 의뢰에 의해서 발행된 신용장의 청구를 위해 제시된 철도운송증권의 복본은 철도청에 의해 적정하게 스탬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조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를 수령한 은행이 심사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가 발행의뢰인에 의해 거절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판결하였다. 은행이 상기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적절하게 주의깊은 심사를 행하면 간과될 수 없을 정도로 서류의 하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서류상 위조가 명백하여도 한번 심사하여 인지할 수 없었던 위조이었기 때문에 위조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⁴⁸⁾

IV. 連繫性 要件

연계성이란 은행의 판단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서류가 내용

에서 신용장은 여권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지명된 자에 의해 서명된 품질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수익자에 의해 이러한 서류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지명된 자에 의해 서명된 것이 명백하였다. 또한 은행의 검사를 위해 정확한 여권번호와 지명된 자의 서명이 있는 여권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서류를 수리하였으나 사실 그 서류와 여권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발행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다.

44) KG, JW 1924 S. 2048; 싱가포르 최고재판소 1974년 판결 1 Lloyd's Rep. 56.

45) BGH, WM, 1958, s. 587.

46) Vallenthin, *Rechtsgrundlagen des Bankgeschäfts*, 1974, s. 181.

47) Rev. de la Banque, 1978, s. 269.

48) 橋本喜一 譯, 前掲書, 182~183 面.

상으로 상호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면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에 의해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동일한 물품을 나타내는 것임을 명확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⁴⁹⁾ 이와 관련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 연계성 요건은 상업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특히 적합하며, 이에 대한 요구는 법원에 의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⁵¹⁾

특히 연계성 요구에 대한 엄격함은 *Banque de l'Indochine et de Suez S.A v. J.H. Rayner(Hincing Lane) Ltd* 사건⁵²⁾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Markhor호로 지정된 선박으로 운송되는 설탕매매에 관한 것이었다. 디뷰티(Djibouti)에 있는 발행은행은 원고은행이 통지하고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동 은행은 서류 불일치⁵³⁾를 이유로 피고에 대해 유보조건부(under reserve)로 지급하였다. 발행은행은 언급된 서류와 기타 서류간에는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였기 때문에, 서류인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은행은 피고에게 유보조건부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지만, 피고가 거절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사항의 하나는 제시된 서류에 적절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서류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관하여 파커(Parker) 판사는 이들 서류의 실제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No.4에 기재된 서류가 기타서류와 적절히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연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즉 설탕이 ‘m.v.Markhor 또는 대체선박’으로 운송되었음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상의 명시사항을 언급하면서, 이는 다른

49) 그러나 참고번호나 기타의 점에 의해 상호 연계될 필요는 없다.

50) UCP, 1993, Article 13-a.

51) Clive M. Schmitthoff, *op. cit.*, p.101.

52) 2 Lloyd's Rep. 476; (1983) 1 Lloyd's Rep. 228 C.A.

53) *Banque de l'Indochine*는 전신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① 선박이 국제선박협회의 회원인 선박회사의 것임을 증명하는 SS Co 증명서가 없다. ② 선화증권상에 ‘not portmarked, vessel not responsible for incorrect delivery. Any extra expense incurred in consequence to be borne by consignee’라는 조항이 있다. ③ 신용장상에 ‘서류에 의한 증명이 있다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고 있어도 지급이 행해지는 보험’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보험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보험서류가 요구되고 있지 않아도). ④ “중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및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E.U.R.1 증명서 기재가 나머지 서류나 신용장과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선박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명시는 다른 설탕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상업송장 외의 기타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general terms*)로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계성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있다.⁵⁴⁾ 특히 운송서류인 선화증권의 경우, 선박회사의 입장으로는 자신이 수령한 물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물품에 대한 기술은 상업송장보다도 간략하게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하여도 된다.

예를 들면, *Midland Bank Ltd. v. Seymour* 사건⁵⁵⁾에서, 발행은행(원고: Midland Bank)이 발행한 신용장상에는 'invoice and bills of lading evidencing shipment from Hongkong to Hamburg duck feathers-85 per cent clean, 12 bales each weighing about 190 lbs.'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한 상업송장은 화물에 대한 기술 전체와 화인이 있었지만, 선화증권은 단지 '12 bales Hong Kong duck feathers'(홍콩산 오리털 12 꾸러미)라는 표시만 나타나 있었고 각 bale의 중량이나 '85 per cent clean'(순도 85%)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서류에 대해 은행은 수리하였지만, 발행의뢰인(피고: Seymour)는 발행은행이 자신이 지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상환을 거절하였다. 또한 발행의뢰인은 화물이 도착되어 검사하여 본 결과, 계약내용과는 전혀 다른 쓰레기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화증권을 거절하여야 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데브린(Devlin) 판사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에 어떤 기술이 있고 일조의 서류 전체에 기술이 기재되어 있을 것과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갖추고 있어 충분하다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⁵⁶⁾ 즉 "일조로 된 서류는 모든 특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는 양호한 선적서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 (각각의) 서류가 자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에 기재된 - 동일한 화인을 기재하고 있고, 또 동시에 제공되는 송장 작성의 원인이 되는 선화증권상의 화인과 같은 - 특

54) UCP, 1993, Article 37-c.

55) (1955) 2 Lloyd's Rep. 147. 특히 이 사건은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선화증권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생하여 온 혼란스러웠던 사고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선화증권의 기술에 대한 영미간의 사고격차를 크게 좁힘은 물론 업계관행을 신용장통일규칙에 현저하게 접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6) *Ibid.*, at 153.

기사항을 담고 있는 일조로 된 서류를 가지는데, 이들 서류는 물품에 관한 완전한 명세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계성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홍콩의 Wing Hang Bank로부터 “포장명세서가 물품명세를 나타내지 않고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는 명세(수량, 스타일번호, 송장번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를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불일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업송장상의 내용과 포장명세서의 그것과는 충분한 연계(sufficient link)가 있기 때문이다. 포장명세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 21조(특정하지 않는 발행자 또는 서류의 내용)의 적용대상⁵⁷⁾이기 때문에, 신용장상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포장명세서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기타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⁵⁸⁾

그러나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다른 서류와의 연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e National Bank* 사건⁵⁹⁾에서, 신용장은 ‘100% Acrylic Yarn’라고 기재한 상업송장 3통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수익자가 실제 제시한 상업송장에는 ‘Imported Acrylic Yarn’라는 기재가 있었다. 이에 발행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어음인수를 거절하였고, 수익자는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일심 법원은 각 상업송장을 그것에 부착한 포장명세서(‘Cartons marked: - 100 % Acrylic’라는 기재가 있음)와 함께 살펴본다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는행인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어음대금에 이자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상에는 환어음의 일부는 선화증권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또 어음에는 제서류⁶⁰⁾를 첨부할 것을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57)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자, 서류의 문언 또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자료내용이 제시된 그밖에 명시된 서류와 모순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58) *Query of Wing Hang Bank Ltd., Hong Kong*; ICC Document 470/GE.6, November 15, 1994.

59) (1975) 528 F. 2d 802 (4th Cir.).

60) ① 어음은 100,000 lbs. 100 % Acrylic Yarn, Packaged Dyed at \$ 1.35 per lb., FOB Buyers Plant, Greensboro, North Carolina Land Duty Paid라고 기재한 상업

실제 선적은 1973년 8월 8일에 행해졌는데, 수익자의 지시로 동 일자의 선화증권이 발행되었고 물품을 포장한 각 상자에는 선화증권을 참조한 포장명세서가 첨부되었다. 그리고 물품은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각 선화증권이 포장명세서와 함께 수익자에게 송부되었다. 이에 수익자는 상업송장 3통을 작성하여 각각 포장명세서를 부착하였다. 동시에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환어음(어음의 일자는 1973년 8월 13일) 등을 작성하여 이러한 모든 서류를 서류송부은행을 통해 발행은행에 제시하였다. 8월 16일 발행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령한 다음 서류심사를 하였지만 서류상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⁶¹⁾ 8월 20일에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게 이 불일치점을 철회하여 어음인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없을지를 문의하였지만, 발행의뢰인측은 동 회사가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른 한편 수익자는 8월 27일에 발행은행 앞으로 '100% Acrylic Yarn'라는 기재가 있는 수정된 상업송장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8월 29일 발행은행은 환어음의 만기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수거절을 하여 모든 서류를 반송하였다.

여기에는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상관습상의 문제로서, 수익자가 발행은행에 제시한 서류가 과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은 특히 각 상업송장이 '100% Acrylic Yarn'라는 기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실 이는 일보의 양보도 없는 점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제시한 각각의 상업송장은 그 서류에 부착된 포장명세서에 'Cartons marked: - 100% Acrylic'라는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의 물품명세는 사실상 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포장명세서가 상업송장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업송장의 일부가 되고 모든 상업송장은 그 포장명세서와 함께 일체로 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상업송장과 기타서류간

송장 3통. ② 물품이 세금포함으로 매수인의 공장에 인도된다는 취지의 증명서. ③ East Coast Port로부터 North Carolina의 Adastra Knitting Mills.까지의 선적을 증명하는 내수선화증권(Inland Bill of Lading).

61) ①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에는 '100% Acrylic Yarn'라는 기재 대신에는 'Imported Acrylic Yarn'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② 수익자가 발행하여 제시한 환어음 발행일자는 8월 13일로 이는 신용장조건상의 8월 8일과 다르고, 또 만기일도 '60 days date'로 발행되지 않고 '60 days from Bill of Lading 8/8/73'로 기재되어 있었다.

에 설정한 명백한 구분에 유의하여, 특히 상업송장의 기술에 대해서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고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은행으로서 는 서류 문면에 상업송장이라고 기재한 서류만을 상업송장으로서 취급할 뿐이고, 또한 포장명세서와 같은 기타서류는 자세한 검토를 요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抗訴審에서는 일심 판결을 번복하여 이 사건에서의 상업송장은 신용장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를 생각하면, 이 사건에서 발행은행이 보여준 신용장상의 문면에 고집한 인수거절은 정당한 행위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xotic Traders Far East Buying Office v. Exotic trading U.S.A., Inc.*, 사건⁶²⁾에서는 상업송장이 정규성을 결한 경우 다른 서류와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용장상에는 'FOB Seoul'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상에는 'FOB Korea'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상업송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특별미국세관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및 선적통지내역텔레кс 사본)상에는 물품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적재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은 상업송장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수익자의 지급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법원은 여타 서류와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이 상업송장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로서 발행은행 및 발행의뢰인의 지급거절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앞에서 분석한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e National Bank* 사건에서의 항소심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V. 結 論

화환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 이는 대체로 수익자에게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가 모든 면에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다면 어떠한 혼란도 발생될 수 없다. 그러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류를 제시받는 은행에게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신용장상에서 많은 종류의 서류제시를 요구하고 있거나 그 기

62) (1989) 9 UCC Serv. 2d 698, 717 F. Supp. 14 (D.C. Mass).

재명세가 많을수록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은행은 매일 많은 양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과연 일치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상에 엄밀한 의미에 있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수익자는 은행에 의한 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수익자는 화환신용장하에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작성되고 제시되어야 할 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어야 하는 당사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떠한 불만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요건 \ 서류	상업송장	상업송장 외 기본서류	임의서류
완전성	○	○	○
정규성	○	△	△
연계성	×	△	△

○:엄격히 요구됨 △:보통으로 요구됨 ×:요구되지 않음 :분쟁다발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완전성과 정규성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하고, 정규성이 결하는 경우 다른 서류와의 연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의 경우 완전성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하고, 정규성이 정확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신용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정규성, 상업송장 외 기본서류(선화증권과 보험서류)의 경우에는 정규성과 연계성, 그리고 포장명세서와 각종증명서 포함하는 임의서류의 경우에는 완전성과 연계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參 考 文 獻

- 姜元辰, “信用狀과 商業送狀의 一致性 論爭”, 仲裁, 제 294 호, 1999.
- 橋本喜一 譯, 荷爲替信用狀の法理概論, 九州大學出版會, 1994.
- 小峯 登, 1974 年信用狀統一規則(上卷),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4.
- Arora, Anu,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Lloyd's of London Ltd., 1984.
- Barski, Katherine A., “Letters of Credit: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Loyola Law Review*, Vol. 41 Winter 1996.
- Bennett, Howard 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ts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1995.
- Dolan, John F.,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 5, 1988.
- _____,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Warren, Gorham & Lamont, 1991.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A Comparative Study*,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70.
- Hotchkiss, Carolyn, “Strict Compliance in Letter-of-Credit Law: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3, 1991.
- ICC, ICC Document 470/GE.6, November 15, 1994.
- _____, Opinion(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cation S.A. 1982.
- McLaughlin, Gerald T., “Structuring Commercial Letter-of-Credit Transactions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Buyer”,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1, 1989.

- _____, "On The Periphery of Letter-of-Credit Law: *Soft-Journal*, January-February, 1989.
- Rose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Letter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 _____, "Letter-of-Credit Practice: Revisiting Ongoing Problem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4, No. 2, 1991.
- Schmitthoff, Clive M., "Discrepancy of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7 March.
- _____, *Schmitthoff's Export Trade*, 8th ed., 1986.
- Their, Jonathan K., "Letters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ham Law Review*, Vol. 50, 1982.
- White, James J., & Summers, Robert S., *Uniform Commercial Code*, 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ABSTRACT

Requirements for Compliant Documen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Lee, Cheon Soo

Beneficiary must present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If the documents conform in all respec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beneficiary has a right to payment from an issuing or confirming bank. And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presented by beneficiary for taking up the documents. If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banks may refuse to take up the documents.

But standard for compliant documen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in the UCP or Section 5 of UCC is unclear. Because UCP Article 13(a) provides merely that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lso UCC Section 5-108(a) provides merely that. ...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ll problems are not resolve with easy by these regulations.

Accordingly, I examined requirements for compliant documen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n the basis of the UCP and cases. To analyse this, I divided into three requirements ; (1) Completeness, (2) Regularity, (3) Linkage.

Key Word : Letters of Credit, Requirements for Compliant Documents.